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14

발의연월일: 2024. 12. 12.

발 의 자:주철현・어기구・조계원

박균택 • 이건태 • 안호영

정성호 · 천하람 · 백승아

황명선 · 문금주 · 모경종

조인철 • 한정애 • 송기현

민형배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사업 시행 및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 경제·사회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설립 및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관리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용수와 관련된 저수지, 농수로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수리시설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시설감시원은 법적 근거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 지침에 따라 도급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리시설감시원으로 활 동하는 지역 주민의 대다수는 60, 70대의 고령자로서 여름철 장마, 폭 우 발생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임.

또한 2023년 함평에서는 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하여수문을 여는 작업을 하던 수리시설감시원이 사망하였으나 근로자로인정받지 못하여 적절한 피해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 수리시설감시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 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한 필요 조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명예수리시설감시원) ① 공사는 농업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물 소재지의 지역 주민 등을 명예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업무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공사는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 업무 범위, 위촉·해촉 절차, 수당 지급 및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설> ① 공사는 농업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소재지의 지역주민 등을 명예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한 경우업무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의 역부수행으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① 공사는 농업용수 및 산기반시설물을 안전하7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생산기반시설물 소재지의 주민 등을 명예수리시설 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함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다. ③ 공사는 명예수리시설 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명예수리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명예수리시설감시원) ① 공사는 농업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소재지의 지역주민 등을 명예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한 경우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의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명예수리시설감시원원의 자격,업무 범위,위촉・

으로 정한다.